예 산 총 칙

제1조 (예산의 구성) 2022년도 대한성공회서울교구사회복지재단 산하 우리마을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은 입소자부담금수입과 보조금수입, 사업수입, 법인전입금, 후원금수입, 이월금, 잡수입으로 한다.
제2조 (운영비 예산) 총 세입예산액은 3,324,019천원, 총 세출예산은 3,324,019천원으로 한다.

1) 세입예산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고 세부내역은 세입예산서 내역과 같다.

① 입소자부담금수입	45,240천원
② 사업수입	1,794,192천원
③ 보조금(경상보조금 및 기타보조금)	1,005,545천원
④ 후원금수입	152,000천원
⑤ 법인전입금	30,000천원
⑥ 전년도 이월금(후원금 포함)	282,562천원
⑥ 기타 잡수입	14,480천원

2)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서 내역과 같다.

① 사무비(인건비)	961,490천원
② 사무비(운영비)	107,058천원
③ 재산조성비	87,387천원
④ 사업비	1,986,280천원
⑤ 예비비 및 기타	181,804천원

제3조 (예산의 집행) 예산의 집행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우리마을 시설의 제 규정을 준용하며 세출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예산의 각 항 목간에 다음과 같이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.

① 관간의 전용은 이사회의결을 거쳐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.

② 동일 관내의 항간의 전용은 이사회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.

③ 예산 성립 과정에서 이사회에서 삭감한 항·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.

제4조 (보조금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수익자부담 경비 등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이라도 보조금 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5조 (추가경정예산)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이사회의결을 받아 집행한다.

제6조 (보조금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) 정부회계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 변경된 과목으로 승인된 것으로 보며,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및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집행한다.

제7조 (채무부담행위) 없음

제8조 (명시이월비) 없음

제9조 (사고이월비) 없음

제10조 (예비비) 2022년도 사업수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집행사유 발생 시 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의 5%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. 단, 예비비 사용은 대한성공회서울교구사회복지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한다.